

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0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3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행과 개정안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'높이기 위한 교육·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'를 '높이고'로 수정함. (안 제7조제2항제1호)
- '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·지원'을 삭제함. (안 제7조제2항제11호)

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“높이기 위한 교육·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”을 “높이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대비요령”을 “대피요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각 호와”를 “각 호와 제3항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<u>구호</u></p> <p>10.·11. (생략)</p> <p>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<u>홍보</u></p> <p>2.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<u>적응교육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----- ----- 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 <u>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</u>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·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</u></p> <p>2. ----- ----- -- <u>적응교육과 상담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</u></p>	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---- <u>대피요령 -----</u> -----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 <u>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</u>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10. <u>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</u></p>	<p>10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11. <u>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·지원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12. <u>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·지원</u></p>	<p>11. (개정안 제12호와 같음)</p>
<p>9. (생략)</p>	<p>13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	<p>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③ <u>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각 호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④ ----- ----- 각 호와 제3항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지원의 범위)”를“(지원의 내용 및 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“구호”를 “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”를 “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적응교육”을 “적응교육과 상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

10.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

11.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·지원

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각 호와”를 “각 호와 제3항과”로 한다.

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<u>구호</u></p> <p>10.·11. (생략)</p> <p>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<u>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</u></p> <p>2.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<u>적응교육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9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</u>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적응교육과 상담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</u></p> <p>10. <u>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</u></p> <p>11. <u>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·지원</u></p> <p>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<u>각 호와</u>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</p>	<p><u>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----- <u>각 호와</u> 제3항과 ----- -----.</p>